설명 자료

제공일자: 2026년 10월 일

담당부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미디어홍보담당관	02-2116-3440
언론팀장	02-2116-3425
담당자	02-2116-3420

〈관내사업 보도 언론인 고소 노원구 '불송치·불기소에 또 패소'〉 관련

- 2026년 10월 2일 뉴스클레임(최서영 기자)
- 2022년 동일로 간판 교체 사업 관련 비판 기사를 둘러싼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 관련 보도

〈 주요 설명내용 〉

□ 2022년 노원구에서 추진한 '동일로변 간판 교체사업'에 대해 '열린시민뉴스'가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노원구(원고)가 열린시민뉴스(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에 대해, 2026년 10월 1일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 이튿날 이와 관련한 '뉴스클레임'의 취재 및 보도가 있었습니다.

□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우리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소송임을 감안하여 모든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뉴스클레임 보도 중 “언론보도 정정 민사소송을 건 노원구와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1일 패소했다. 원고 측은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언론인을 형사 고소도 했으나, 최근 불송치와 불기소로 일단락된 바 있다.” 부분

○ 노원구는 열린시민뉴스의 해당 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양측 당사자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의 성격상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노원구의 청구가 타당했는지, 조정대상 기사의 정당성 및 사실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이후 노원구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을 사유로 한 형사 고소는 노원구가 제기한 것이 아니며, 기사에 실명이 등장하는 공직자의 개인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 측은 ~ 형사 고소도 했으나’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2. 뉴스클레임 보도 중 “노원구는 본지에 “유감스러운 결과다” 항소를 검토중”이라며 “이 사안은 노원구의 사안이지, 전 구청장의 개인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직 구청장이 노원구의 소송을 승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부분 및 “현재 동일로 간판 개선사업은 수많은 소송과 논란에 휘말려 있다.” 부분

○ 노원구가 정정보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과 동일 인물이 대표로 있는 간판개선사업을 둘러싼 의혹 제기, 고발 및 보도를 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소송, 수사, 감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중 ‘노원구’가 원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본 건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이

있으며, 이 소송은 전임 노원구청장 개인을 대리해 지방자치단체 노원구가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닌, 노원구가 소송 주체인 사건입니다. 전임 구청장과 기사에 실명이 언급된 다른 공직자가 개인 자격으로 진행한 법적 대응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 노원구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가 훼손될 것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정정보도를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구청장이 바뀐 것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1심 선고가 있은 바로 다음 날 뉴스클레임의 보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 항소 여부의 검토과정에서도 구청장 개인의 명예보다 구 행정에 대한 신뢰,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견제에 따른 공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 다만 최초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이, 언론의 비판과 평가에는 올바른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뉴스클레임 보도 중 “양지기업은 오승록 구청장의 향우회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는 위 사실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부분 및 “김 발행인은 ~~ 말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분

○ ‘前 구청장과 특정 업체의 대표가 향우회 지인인지 여부’는 처음부터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 사업을 수주해 정상적으로 과업을 완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 노원구가 소송을 제기한 사유 역시 '간판개선사업은 제기된 의혹과는 달리 적법하게 추진되었다'로 포괄되어 있습니다.

○ '구청장의 향우회 지인이 사업을 수주했다'는 것 외에 어떤 사유에서 해당 사업이 위법하고, 그 결과가 정치자금 의혹으로 이어지는지는 오히려 당초 기사를 작성했던 피고가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 그러나 피고 역시 '향우회 소속' 외에 어떠한 근거도 대지 않은 채 '정치자금 의혹'으로 보도한 후 재판 과정에서 다른 입증이 없었고, 노원구는 사업 추진 전반의 적법성을 통해 포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또한 재판부는 소송 대상 기사가 '상황의 전달에 그치는 기사'이므로 '구청장과 구 소속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양지기업 관련 주장에 원고가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 이유로 기재된 점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4. "일례로 한 노원구민이 간판 철거 과정에서 영구 장해를 입고도 되레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도 있다." 부분

○ 해당 사건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제기된 소송입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당초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업무방해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원구 및 노원구 소속 공무원은 재판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해당 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위법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피고 노원구), 행정대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민사소송(피고 노원구)에서는 각각 노원구가 승소했으며,

○ 뉴스클레임 기사에는 "김씨 고소장에 따르면, 사업 당시 김씨 가게의 간판은 서울시 조례에 비춰 합법이었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 행정소송 판결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치된 간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대집행은 정당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열린시민뉴스”가 당초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서 언급된 동일로 간판개선사업의 주요 사실관계는, 최초 보도 당시 열린시민뉴스측에 밝힌 바와 같습니다. 이후 간판개선사업 관련하여 감사, 수사 등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동일로 간판개선사업 보도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 및 노원구 입장

○ 지방보조금 허위집행, 공무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 사실이 아님

○ 특정 업체의 독점 수주 특혜 및 정치자금 유착 : 사실이 아님

○ 주민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사실이 아님

○ 합법적인 간판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 : 사실이 아님

6. 주요 수사, 감사, 소송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에 따른 서울시 감사 : 열린시민뉴스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시정 요구 또는 관련자 징계 요구 없음

○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취소 행정처분 : 각하 및 기각(노원구 승소)

-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손해배상 및 권한 남용 : 종결(노원구 승소)

○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노원경찰서 수사 : 불송치 결정(무혐의)

□ **붙임 : 뉴스클레임 보도 내용 1부.**